

작성 방법

- ① 관리번호: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.
- 인적사항(납세의무자)란
 - ③ 주민등록번호: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 - ④ 연락처: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
 - ⑤ 현주소(신고 당시 주소):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⑥ 신고 구분: 확정신고, 예정신고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, 결정,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⑦ 귀속연도: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.
- ⑧ 신고유형: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신고유형 (11-자기조정, 12-외부조정, 13-성실납세, 14-성실신고확인, 20-간편장부, 31-추계(기준율), 32-추계(단순율), 40-비사업자) 을 기재합니다.
- ⑨ 기장의무: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기장의무 (1-복식부기의무자, 2-간편장부대상자, 3-비사업자) 를 기재합니다.
- ⑩ 거주구분, ⑫ 내외국인, ⑬ 외국인단일세율적용: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거주구분, 내외국인, 외국인단일세율적용여부를 기재합니다.
- ⑬ 세무서(담당자):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.
- ⑭ 당초 납부기한: ⑮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, ⑯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.
- ⑰ 최종 납부기한: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.
- ⑱ 송달불능 사유, ⑲공시송달일: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.
- ⑳ 구분: "당초"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, "수정"은 수정신고·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.
- ㉑ 신고·결정·경정일: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, 결정,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.
 - ㉒ 결정·경정사유 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결정·결정한 사유를 기재합니다.
 - ㉓ 발행연월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,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.
 - ㉔ 발행번호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,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.
-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
 - ㉕ 세액감면 · ㉖ 세액공제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 "종합소득세 ·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" 서식의 세액감면명세서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상의 법조문, 감면 · 공제액 및 감면 · 공제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 - ㉗ 가산세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 서식의 가산세명세서상의 구분, 기준금액,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 - ㉘ 중간예납: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.
 - ㉙ 원천징수: 원천징수(납세조합 징수 포함)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.
 - ㉚ 수시부과 등: 수시부과세액,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,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
 - ㉛ 분세: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.
 - ㉜ 무신고 등 가산세: 가산세 중 ㉝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, 가산세 구분, 기준금액,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환급금 신고계좌란
 - ㉞ 은행코드: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.
 - ㉟ 계좌번호: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.